Text 조사우수사례 평가 보고서

Special

I	개인·법인 업종(코드)		조사유형 외형구간		조사청	
	법인	금융업(660100)	정기	4조원대	지방청	

Text 조사성과(결과)

Text 가. 조사대상 개요

Text 0 '91년 0000생명주의 현지법인으로 설립, '18년 000생명보험 으로 상호변경, Text 19.2월 0000지주에 인수, '21.7월 00생명에 흡수합병

 Text
 이 핵심 조직인 FC채널을 기반으로 BA(Bancassurance) 및 GA 등 채널 다각화를 통해

 Text
 안정적인 성장 추구하며 20~30대 남성 전문 FC 시장을 개척하여 특화

Text ○ '20.11월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 수입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은 0.0%로 14개 Text 중소형 생명보험사 중위권에 해당

Text 나. 적출성과

Text ○ 주요 적출 내역

Special

ıl	연 번	조사항목	코드	적출요지(결정경정 사유)		
	1)	과다경비 등 부인	11209	합병존속법인이 부담해야할 IT 및 재 무통합시스템 유지 비용 손금불산입		
	2	대손준비금 환입분 미차감	11608	대손준비금 환입금액 미차감분 경정		
	3	대리납부 미이행	20601	해외업체에 지급한 교육 및 유전자분석 용역 수수료 대리납부 신고 미이행분 과세 경정		

Text II 조사노하우

Special

적출①

❖ 과다경비 등 부인 (항목코드: 10203)

합병법인의 자산임에도 피합병법인이 관련 비용 부담

Text **1. 조사착안**

Text 가. 착안사항 도출 과정

Text ○ 조사 개시 전 합병법인을 조사중임에 따라 착수 전 언론보도 자료 등을 Text 통해 합병 예정 기사를 스크랩하여 기사를 수집함

Text O 합병하는 시점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합병법인은 통합하기 위한 과정으로

Text 조사법인(피합병법인)의 보험 가입 이력 등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제적 개발이 예상되었음

Text - 따라서, 통합시스템 개발하는 과정에서 합병법인의 비용 또는 자산임에도 Text 피합병법인이 사용하면서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검토 착안함

Text 나. 착안사항 관련 법령 및 예규 검토

Law 법령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Law}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 ①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2.4, 2010.12.30, 2019.2.12>
-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후략)

예규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57 [법령해석과-1945]

○ 합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합병 비용의 법인세법상 부담 주체 및 부담 비율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로서, (중략),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자문용역 계약내용, 자문용역의 성격, 제공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또한, 합병계약 체결 이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통합작업을 수행하는 통합추진단 소속 인원의 인건비 및 관련경비와 통합작업 관련 외부컨설팅 비용은 합병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것으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Text **2**. 조사기법

Text 가. 적출항목 조사 방법

- Text 조사법인의 합병 보도가 나온 시점이 '18년부터 지속적으로 합병관련 보도가
 - Text 나왔었으며, 그에 따른 컨설팅 비용, 제반 부대비용 등을 직전 과세기간
 - Text <mark>매출액 비율로 안분해서 부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함</mark>
- Text 이후, '20.3.31 일자 기사에서 **'21.7월에 합병할 것을 공시**하였으며, 그와
 - Text 동시에 전산 통합작업에 속도를 가할 것임을 밝혀서 통합시스템 비용이
 - Text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언제부터 시스템 구축했는지
 - Text <mark>확인하기가 어려웠음</mark>
- Text 계속적으로 기사 확인하던 중 '22.5월 기사에서 IT통합시스템이 22개월만에
 - Text 작업을 완성하였다는 기사를 접하였으며, 그에 따라 통합시스템을 본격적
 - Text 으로 작업하기 시작한 시점은 합병할 것을 공시한 지 4개월 남짓 뒤인
 - Text **20.7월부터 통합시스템 구축**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음
 - Text 구축 비용 부담 또한, 조사법인은 합병법인과 지속적으로 직전연도 매출액
 - Text 비율로 부담하고 있음을 전자문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 Text 통합시스템을 사용하면서 감가상각비 및 유지보수비용을 계상한 사실이
 - Text 조사법인이 제출한 전표에서 확인할 수 있었음
- Text 전표 및 전자문서를 바탕으로 '20.7.~'21.6.까지의 통합시스템 감가상각비
 - Text 880백만원 및 관련된 유지보수비용 1,974백만원을 부담한 사실을 확인

Text 나. 납세자 주장 및 과세논리

- Text (납세자 주장) 합병 기사가 난 부분은 사실이나, 단순한 기사일 뿐 구체적으로 Text 합병 관련 세부 계획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 비용의 성격으로 보아, Text 보수적으로 매출액 비율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 Text <mark>- 설령 합병법인의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통합시스템은 흡수합병되어 해산되기</mark>
 Text 전까지 사용한 것이므로 감가상각비 및 유지 비용 부담은 적정
- Text (조사팀 과세논리) 궁극적으로 통합시스템은 합병법인이 업무의 편리함을 위해

 Text 사용할 자산이고, 예규에서 보듯이 합병 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통합시스템

 Text 및 인건비 등은 합병법인의 손금이라는 규정을 종합할 때,
 - Text 통합시스템은 합병법인의 소유이고, 자산 계상 및 유지 비용 부담 주체 또한 Text 합병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Text 다. 핵심 증거자료 확보

- Text 전자문서에서 통합시스템 구축과 맞물려 '20.7월에 비공개 문서로 합병 계약서를 Text <mark>내부적으로 작성하고 보관한 사실을 확인함</mark>
 - Text 조사법인 재무이사와 수차례 면담 진행하여 합병 관련 세부 내용은 외부에 Text 유출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설득하여, 조사팀 전원이 비밀엄수 서약을 하는 Text 조건으로 합병계약서 실물을 확보함

Text <mark>라. 도전적 과세 및 처분 유지</mark>

- Text 조사항목에 대한 세법 해석자료, 심판례 등 합리적 과세근거를 제시하고, Text 조사법인에 충분한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여 과세품질 제고에 힘씀
- Text 조사법인은 과세 타당성을 인정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조사종결 Text 후 불복 없이 고지세액 전액을 납기내 현금 납부함

Special

적출②

❖ 대손준비금 환입금 미차감 (항목코드: 11608) 미환류소득 계산 시 대손준비금 환입분 미차감

Text 1. 조사착안

Text 가. 착안사항 도출 과정

Text - 금융업은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따라 업종 특성상 일정 금액의 대손준비금을 Text 설정 및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금액을 적립하여야 함

Text - 미환류소득 계산 시, 금융업의 경우 대손준비금 적립액을 상법상 의무적으로

Text 적립해야 하는 이익준비금과 마찬가지로, 대손준비금 적립액을 미환류소득

Text 산정 시 차감 항목에 포함하고 있음

Text (**(착오 판단)** 대부분 법령에서 음수가 나오는 경우는 '0'으로 보아 음수를 Text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해당 조문을 사전 검토한바, 음수를 인정하고 있음을 Text 인지하고, 기업이 착오 판단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함

Text - 조사법인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백만원)

	<u> </u>						
Table		구분	'21년	'20년	'19년		
	미처분	-이익잉여금	2,004,435	2,101,243	1,977,929		
	이익잉여금 처분액	이익준비금	_	_			
		기타법정적립금 (대손준비금)	-	△1,219	89		
		배당금 외	△235	111,520	104,668		
	차기이월미	처분이익잉여금	2,004,200	1,990,943	1,873,170		

Text **2**. 조사기법

Text 가. 적출항목 조사 방법

- 그 중, 대손준비금 환입 발생한 금융업종의 법인세 신고 내역을 확인한 바,

Text 미환류소득 법인세 신고 상 차감항목이 아닌 가산항목에 대손준비금 환입액을

Text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함

Text ○ (내부자료 확보) 조사 착수한 이후, 대손준비금 설정 전표 내역 및, '20년도에 Text 대손준비금 환입으로 회계처리한 전표 명세 확보함

Text 나. 적출항목 관련 법령 검토

Text O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조사팀의 대손준비금 차감액은 '0' 미만의 음수를 Text '0'으로 본다는 문구가 없으므로 가산 항목에 포함된다는 과세 논리가 타당함

Law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④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중략)
-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 (차감소득)
- 다.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Law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④ 영 제100조의32제4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은 행법」등 개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금액 한도 이내에서 적립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 1. 「은행법」등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
- 2.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Text 다. 처분 유지

Text <mark>(법리해석 오류) '20년</mark> 귀속 대손준비금 환입 1,219백만원을 미환류소득 법인세 Text 신고 시 미반영한 사유를 확인한바 해당 대손준비금 환입분 차감 대상이 Text (0'보다 작으므로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음을 확인함

Text - 해당 부분에 대해 법령상 열거하지 않는 이상 '0' 미만의 음수를 '0'으로 보아
Text 차감 대상 미환류소득은 '0'이 아닌 음수이므로, 차감 항목에 음수 표시를 하여

Text <mark>반영해야 함을 설명함</mark>

Text - 납세자 측도 조사자의 설명을 듣고 법령 확인한 후, 법령해석 오류임을 Text 시인하고 과세가 타당함을 시인

Text ○ (납기내 현금납부) 위와 같이, 조사법인은 과세 타당성을 인정하고 확인서를 Text 작성하였으며, 조사종결 후 불복 없이 고지세액 전액을 납기내 현금 납부함

Special

적출③

❖ 대리납부 미이행 (항목코드: 20601)

해외에서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대리납부 미이행

Text **1. 조사착안**

Text 가. 착안사항 도출 과정

Text (의환송금내역 사전 분석) 조사법인의 해외송금내역 중 적요란 항목을 분석한 바,

Text 대부분은 금융거래 또는 채권에 대한 수수료로 기입하여 지급하였으나, 일부

Text 항목은 '기타 사업서비스' 항목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함

Text < 조사법인 대리납부 신고 내역 >

(백만원)

Table	; 		분	합 계	2019년		2020년		2021년		
	Т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과	세	#	준	1,532	254	405	503	238	132	-
		환 송 타사 C			2,985	589	561	956	362	517	_

Text 나. 착안사항 관련 법령 및 예규 검토

Law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60조제1항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 등을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 1. 「소득세법」제120조 또는 「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law 예규 부가가치세과-476, (2014.05.19.)

○ 외국법인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제공받아 무료 제공 시 연구 용역 대가가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고 「같은 법」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규 부가가치세과-770, (2013.08.28.)

○ 외국법인으로부터 교육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 여부

「평생교육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고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u>현지법률에 따라 현지국가에 학원, 원격교육시설 및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어 강습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u>

Text **2**. 조사기법

Text 가. 적출항목 조사 방법

- Text (대리납부 신고서 확인) 조사법인의 대리납부 신고 내역을 확인한 바, 대부분

 Text 소프트웨어 사용료 및 무디스 모형 사용 지급수수료 지급분 대리납부한 것

 Text 으로 확인함
 - Text 해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 대리납부 의무에 해당하는지에 Text 대한 검토를 시작하였음
- Text (해외 연구용역) '20년 지급내역 중 aaaaPLAN JAPAN에 송금한 31백만원을

 Text 확인한 바, 유전자 분석에 대한 용역비로 지급하였고 국내에 소비한 사실을

 Text 확인함
- Text (고육용역) 조사법인이 '19, '21년도에 반복적으로 지급한 LL GLOBAL, INC.

 Text (LO○○에서 송금한 55백만원을 검토한바, 미국 생명보험자격시험기관(LOMA)

 Text (자격시험기관인 것으로 확인함)

Text 나. 납세자 주장 및 과세논리

- Text (납세자 주장) 해외 연구 용역을 의뢰한 것은 맞으나, 연구 용역이 아닌 의료용역에 Text 해당되어 부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납부 대상이 아님
 - Text 교육용역은 해당 직원이 납부할 금액을 대신 받아서 납부하는 성격에 불과하므로 Text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 아님을 소명함
- Text (조사팀 과세논리) 해외 연구용역은 국내 연구 용역과는 다르게 과세대상임이

 Text 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설령, 의료용역이라 하더라도 국내가 아닌 해외

 Text 의료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열거되지 않아 대리납부 대상임
 - Text LOOO가 해당 국가에서 교육 관련 인·허가받은 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Text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

Text 다. 처분 유지

Text ○ (국내 사용 소비) 연구용역은 담당자와 국세청 예규를 바탕으로 인터뷰 실시하여,

Text 최대한 논리적으로 과세 사유를 설명하고, 담당자가 인정한 부분한 내용을

Text 문서화 하여 과세 근거 확보

Text - 교육용역은 실제로 수강한 직원을 인터뷰하여, 본인이 LOOO 사이트에서

Text 교육 이수한 내역을 확보함으로써, 국내에서 사용된 것을 확인함으로서

Text 과세 근거 확보함

Text ○ (납기내 현금납부) 조사법인은 과세 타당성을 인정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Text 조사종결 후 불복 없이 고지세액 전액을 납기내 현금 납부함